

##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 나. 폐지사유
  - 필요한 사무용품을 주무과에서 일괄 조달구입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약과 동시에 보다 합리적 이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함.
- 다. 주요내용
  -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 병 향)

-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7-62
----------	-------

제출일자 : 1997. 5. 28

제출자 : 화순군수

### 1. 제안이유

관서당경비내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무용품비 지급의 근거가 되고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사무용품비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사무용품을 일괄조달 구입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약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를 폐지키 위함

##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